

##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이용 약관

### 제 1 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국 IPO 공모주"는 NYSE, NASDAQ, AMEX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IPO를 진행(예정) 중인 주식을 말한다.
2. "청약 대행"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미국 IPO 공모주에 대해 고객의 명의 및 계산으로 청약 신청 주문을 접수받고, 이를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에 전달하는 행위(어떠한 경우에도 일임/자문 그 밖의 투자판단에 관여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를 말한다.
3.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는 미국법상 투자중개업(broker) 인가를 보유한 자로서 회사와 제휴하여 현지에서 미국 IPO 공모주 청약을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청약 대행 수수료"는 청약 대행의 대가로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5. "미국 IPO 공모주 청약 전용계좌"(이하 'IPO 전용계좌'라 한다)는 고객이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지정한 계좌로서 고객 명의의 회사 계좌에 한한다.
6. "청약 대행 증거금"이란 고객이 청약 대행을 신청하기 위해 미리 지급해야하는 선급금을 말하며, 청약 대행 증거금 산정 및 납입은 제5조에 따른다.

**제 3 조 [미국 IPO 공모주 전용계좌의 지정]** ① 고객은 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청약 대행 증거금, 결제대금 및 대행수수료의 송금 또는 회수, 배정 주식의 입고를 받기 위하여 IPO 전용계좌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지한다.

② IPO 전용계좌는 고객 당 1개 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다.

③ IPO 전용계좌는 사전에 해외주식거래신청이 완료된 계좌 중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④ IPO 전용계좌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좌를 통해 청약 대행이 진행 중인 경우, 계좌의 지정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제 4 조 [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① 회사는 고객 요청에 따라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IPO 공모주의 청약을 대행하며, 고객은 미국 IPO 공모주 청약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에 대하여 일체의 청약의 권유를 하지 않으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은 고객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미국 IPO 공모주 청약은 발행사, 미국 IPO 중개회사 등의 사정으로 일정변경, 중단 등이 가능하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조 [청약 대행 신청의 방법등]** ① 고객은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명세에 따라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의 종목, 청약 금액, 공모가 범위 등을 정하여 회사의 모

바일 매체를 통해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을 신청한다.

- ② 고객은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첨>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청약 대행 증거금(미국달러)을 IPO 전용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고객의 신청 내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청약 대행 신청의 취소 등]** ① 청약 대행 신청한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첨>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시까지 회사에 주문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이 주문 취소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청약 대행 신청 시 설정한 청약 대행 증거금을 해지한다.

- ② 청약은 미국 IPO 공모주 발행사,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의 사정 등으로 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청약 대행을 취소하고 설정된 청약 대행 증거금을 해지한다.
- ③ 청약 종목의 발행가가 청약 대행 신청 이후 공모가 범위의 **최고가 대비 20%** 초과하는 등으로 큰 폭으로 변동된 경우, 회사는 신청된 청약 대행을 일괄취소하고 청약 대행 증거금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 조 [청약 주식의 배정, 결제 및 배정증권 입고]** ① 회사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시까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청약 대행 증거금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 대행을 진행하며, 청약 대행 증거금 수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청약 대행 신청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고객이 청약 대행을 신청한 주식의 배정은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의 자체 배분방식에 따르며, 배정 결과는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제2항의 주식 배정을 받은 날 다음 영업일(국내 기준)에 제5조 제2항의 청약 대행 증거금 중 배정에 따른 대금과 <별첨>에서 정한 청약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청약 대행 증거금을 설정 해지 한다.
- ④ 고객이 청약 대행을 신청한 주식의 결제일은 해당 주식의 배정을 받은 날 다음 영업일(국내 기준)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증권이 거래되는 해외유가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배정받은 주식의 입고 전에 출금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결제일에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에서 배정한 주식을 고객의 IPO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별첨>에서 정한 청약 대행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처리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불이행되거나 결제대금의 부족액이 있는 경우 당사 외화증권매매거래설정약관 제4조에서 규정한 결제불이행시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청약 대행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신청한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을 거부할 수 있다.

- 1. 고객이 청약 대행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금융당국의 지시·명령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고객의 청약 대행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9 조 [청약 대행의 한도 설정 등]**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객의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신청 한도를 <별첨>에 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질서유지 또는 공익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청약 대행 한도를 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고객의 청약 대행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당국의 요구 등에 따라 정해진 회사의 청약 대행 한도 관리를 위해 고객의 청약 대행 신청(건수) 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0 조 [약관 및 주요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기준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해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사의 면책]**

- ①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만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분쟁조정 등]**

-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13 조 [관계법규 등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제 14 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제5조제2항의 ' <별첨>에서 정하는 수준' 청약 대행 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청약 대행 증거금 = (청약 대행 신청 금액) X 101%

제6조제1항의 ' <별첨>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시'는 각 청약 대행 신청 주문별로 회사 MTS (티레이더M>해외주식>미국IPO청약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7조제5항의 ' <별첨>에서 정한 청약대행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 ([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고객센터>업무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9조의 ' <별첨>에 정하는 바'는 회사 홈페이지 ([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고객센터>업무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